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9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민홍철·이재정·문대림

복기왕 • 윤종군 • 염태영

양문석 • 이건태 • 정준호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과다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법률 제 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행정적 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	6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			
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u>행정적</u>	<u>행정적</u>		
<u>지원</u> 을 할 수 있다.	<u>·재정적 지원</u>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